

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4.11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정사유

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('04.6.1일 시행)되어 동법 제11조에 조례로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

○ 구 성 :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함
-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.
-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구미소방서장, 구미경찰서장, 육군 제5837 부대 5대대장, 구미교육청교육장,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-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등 재난관리에 경험이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

○ 기 능

-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·
-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의결
-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획 심의
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·조정

-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○ 운 영

- 회의 :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
- 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
3. 제정조례(안) - 별첨

4. 관계법령 - 별첨

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안전관리계획의 심의·의결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(부시장)
2. 구미소방서장
3. 구미경찰서장
4.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장
5. 구미교육청교육장
6.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
7.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

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②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
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에는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회의록의 비치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, 안건,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
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(제68호)은 이를 폐지한다.